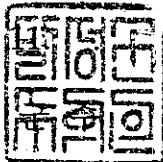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 안	
번 호	102

제출일자 : 2004.

제출자 : 달성군



□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□ 제안이유
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, 주민등록사고의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함.(안 조례 제2조)
- 보험의 가입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함.(안 조례 제3조제1항)
-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함.(안 조례 제3조제2항)
-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조례 제5조제2항)

□ 참고사항

- 제정조례안 : 불임
-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제20조
- 입법예고 : 2004.10.28~11.16(20일간) 결과, 특기사항 없음.

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